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 법예고

2022.02.24

최근 규제대상이 되는 1회용품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입법예고 기간: 2022. 1. 25. ~ 2022. 3. 7.).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대상 1회용품 품목에 1회용 물티슈 추가

자원재활용법에 의하면, 특정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동법에서 정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사용억제의무대상에 1회용 물티슈가 추가**됨.

* 식품접객업, 식품 제조업가공업, 대규모점포 등

(2)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서 PVC재질 포장재 제외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는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 관리함.

(3) 종이팩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

자원재활용법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동법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량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부과금(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130%)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재활용기준비용에 재활용비용산정지수(환경부에서 별도 고시)를 곱한 값으로 산정됨.

종이팩포장재 중 멸균팩은 재활용의무대상포장재(이하 “**EPR 포장재**”)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EPR 포장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파지나 일반팩과 함께 수거처리되고 있으며, 멸균팩의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파지일 반팩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어 왔음. 이에 멸균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일반 파지나 일반팩과 구분하여, 멸균팩의 실질적인 재활용비용을 고려한 재활용기준비용을 별도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23년부터 적용)
185원/kg	멸균팩: 519원/kg 일반팩: 279원/kg

이처럼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이 일괄 상향됨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 미준수 시 각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재활용 부과금의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구성원

이혜정

변호사

02-316-1719

hjelee@shinkim.com

최정은

변호사

02-316-1672

jechoi@shinkim.com

김주연

변호사

02-316-1602

jyunkim@shinkim.com

권이선

변호사

02-316-4697

eskwon@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02-316-4412

gmkim@shinkim.com

장철준 (Anthony Chang)

외국변호사

02-316-4258

achang@shinkim.com

마이클장 (Michael Chang)

외국변호사

02-316-4653

mchang@shinkim.com